

일반공급 안내문

※ 관계 법령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청약 신청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청약일정 및 장소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방법	장소
1순위	2020.06.11(목)	인터넷 청약 (08:00 ~ 17:30)	• 한국감정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청약Home)
2순위	2020.06.12(금)		

■ 당첨자발표 및 계약일정

구분	당첨자 발표	당첨자(특별공급, 일반공급) 서류제출기간	예비입주자 서류제출기간	계약기간
일정	2020.06.18(목)	2020.06.20(토) ~ 06.28(일) / 9일간 ※ 우편서류접수의 경우 06.24(수)까지 도착분에 한해서 접수가능	추후 별도 고지예정	2020.06.29(월) ~ 07.05(일) / 7일간
방법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가능)	예약(당사 홈페이지) 후 방문 접수		예약(당사 홈페이지) 후 방문 접수
장소	한국감정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당사 견본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44-13) / (10 : 00 ~ 16 : 00) ※ 접수 접수건수의 과일로 인한 접수 일정 및 운영시간은 변경 될 수 있음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청약신청 유의사항

구분	내용
신청 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5.28)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잔여세대 발생 시 기타지역(광주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전라남도 거주자) 신청자에게 공급합니다. 청약 신청자 중 동일 자격 또는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광주광역시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지정 고시(변경)」(제2019-156호)에 의거하여 광주광역시 1년 이상 계속거주한 신청자가 광주광역시 1년 미만 거주 신청자 및 전라남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광주광역시 1년 미만 거주 신청자 및 전라남도 거주자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을 주민등록표등(초)본으로 반드시 확인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표등(초)본상 주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 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지역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 해당제한 주택에 기 당첨된 자 또는 기 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자도 본 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 신청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낮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순위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청약통장으로 효력 상실됨 부적격당첨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합니다.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청약부금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대하여 청약하려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전용면적 이상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기준금액으로 변경하여야 가능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하여는 청약통장 변경 없이 청약 가능) - 해당지역 전입일 관련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1년 이전까지 해당지역(광주광역시)으로 전입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 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규모선택 및 변경절차 폐지(2017.04.03.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적용)에 따라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별 · 동별 · 호별 · 향별 구분 없이 주택형태로 청약 순위별로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3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습니다.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청약자 전원은 가점제로 청약 접수하되,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접수하여야 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합니다. - 각 주택형태별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를 가점제로, 60%를 추첨제로 신청자에게 공급하며, 가점제 신청자 미달 시는 추첨제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2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 합니다.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 [본 아파트의 해당순위 입주자지속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 <p>※ 청약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습니다. 2)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3)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문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4) 청약시 기입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의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하며, 청약이후 변동 시 당첨자는 당사에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p>※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사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행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p> <p>※ 인터넷 청약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감정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p>

■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거주구분	순위	주택형	공급방법	신청자격
민영주택	1. 해당지역 : 광주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2. 기타지역 : ① 광주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② 전라남도 거주자	1순위	85㎡ 이하	가점제 40% 추첨제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점제 40%, 추첨제 60% 비율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가점제 낙점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변경한 자 중 지역별 85㎡이하 신청 가능한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총 납입금액이 해당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개정일(2018.12.11.) 이후 계약한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기 바랍니다.
			85㎡ 초과	추첨제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신청 시 모두 추첨제로 접수되며, 추첨제 100% 비율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지역별/면적별 신청 가능한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면적별 신청 가능한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변경한 자 ③ 청약저축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변경한 자 중 지역별/면적별 신청 가능한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총 납입금액이 해당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면적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주택형	추첨제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기간에 상관없이 청약 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자

■ 가점 항목별 적용기준

구분	신청자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20.0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 주택소유 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배점기준표(일반공급)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혼인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	-			
②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			
총점	84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